

#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의 경락손해

가해자가 2019년 5월 1일 이후 책임개시일부터 적용

사고로 인한 자동차(출고 후 5년이하인 자동차에 한함)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%를 초과하는 경우 대물배상에서 자동차시세하락손해로 현금으로 보상 단, 렌트비용은 수리비에 포함 안됨

출고일 기준 	v 김도무 보상내용
만 1년 이내	수리비의 20%
만 2년 이내	수리비의 15%
만 5년 이내	수리비의 10%